

2025년 복무제도 개선사항

1

시간단위 연차휴가제도 도입 2024년 3분기 중앙노사협의회

□ 대상 : 전 직원

□ 주요내용

○ 연차휴가 선택기회 확대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1시간 단위 연차휴가제도 도입

구 분	기 준	개 선
휴가유형 (적용시간)	- 연차휴가(8H) - 반차4H(오전/오후/총량)	- 전일휴가(8H) - 시간차(1~7H) *9시간 이상 불가
부여기준	근속년수에 따라 1일(日) 단위 부여 - {15일+(근속년수-1)/2}	- 소정근로시간(8시간)만큼 시간단위 부여 - {15일+(근속년수-1)/2} x 8시간 *육아기/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 동일하게 8시간 기준으로 부여
사용방법	- 연차휴가 :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반차(오전/오후): 근무시간 고정 - 오전 : 14~18시, 오후 : 8~12시 - 업무시간 중 사용불가	- 전일휴가 : 8시간 휴가사용 - 시간차 : 1시간 단위 휴가사용 - 휴게시간(12~13시)를 제외한 업무시간대 사용가능 ※ 단,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시간차를 사용하는 근무일의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 이상 必 & 1일 1회 限 가능 (PC OFF 적용)
교대/단축 근무자	- 교대 : 일근무시 반차 사용가능 - 단축 : 반차 사용불가	- 교대 : 일근무시 시간차 사용가능 - 단축 : 시간차 사용가능

※ 2024년도 단체교섭에 따라 휴가 사용일수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차감 폐지
근무시간^{연장근로} 포함 4시간 초과시 급식/통근보조비 모두 지급, 4시간 이하시 통근보조비만 지급

□ 신청경로 : ERP > 복무/출장 > 복무신청 > 휴가 > 신규 PC/모바일 모두 가능

* 총량자율근무제, Dual Work 신청화면에서도 신청 가능

□ 시 행 일 : 2025.1.1

* 2024.12.27(금)부터 신청 가능

2025년 복무제도 개선사항

2

육아기 직원 근로시간 단축 개선 및 Dual Work 근무제 도입

2024년 단체교섭

□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

□ 주요내용

- 육아기 직원의 대상 자녀 연령·사용기간 확대 및 단축 급여 지원을 통한 실질적 사용 활성화
- 육아기 직원의 재택/사무실 근무공간 제약없는 유연한 근무 환경 제공('Dual Work')

구 분		기 준						개 선					
대 상		·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배 가산)					
	급여	· 단축시간 비례 차감 (단위 : %)						· 단축시간 2시간 이하 급여 미차감					
		단축시간	1H	2H	3H	4H	5H	단축시간	1H	2H	3H	4H	5H
		기본급						기본급					
		성과급	87.5	75	62.5	50	37.5	성과급	100	100	87.5	75	62.5
	초과수당	0	0	0	0	0	초과수당						
복무		· 연장/휴일근무 불가						· 연장근무 : 월 10시간 이내 가능 · 휴일근무 : 불가					
Dual Work 신설 *재택/사무실 근무 혼용		· 사무실 또는 재택근무 중 택일 · 연속근무 必						· 시간대별 재택, 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 근무시간 분할 가능 (4시간 이상 근무 必) - 예. 9~14시 ^{4시간} 사무실 근무 → 14~15시 이동, 15~19시 ^{4시간} 재택					

□ 신청경로 : ERP > 복무/출장 > 복무신청 > 유연근로 > 근로시간단축 PC만 가능

□ 시 행 일 : 2025.1.1

2025년 복무제도 개선사항

【참고】 Dual Work와 총량자율근무제 비교

구 분	Dual-Work	총량자율근무제
대 상	-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병행 가능 - 교대근무자 사용불가	- 전 직원 ※ 단, 단축근무자와 교대근무자 사용불가
근무장소	- 시간대별 사무실/재택 병행 가능 - 근무시간 분할가능(장소별 4시간 必) - 휴게/이동시간 최소 1시간 확보 必	사무실 또는 재택근무 중 택일 (연속근무 必)
근무형태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내 자율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내 자율
일근무시간	- 최소 4시간 ~ 최대 14.5시간 ※ 단, 단축근무자는 최대 8시간	최소 4시간 ~ 최대 14.5시간
근무 요일	월 ~ 금	월 ~ 토
근무시간대	6 ~ 22시	6시 ~ 22시

※ 총량자율근무제와 Dual Work 동시 사용 불가

□ 신청경로 : ERP > 복무/출장 > 복무신청 > 유연근로 > Dual Work PC/모바일 가능

□ 시 행 일 : 2025.1.1 * 2024.12.27(금)부터 신청 가능

2025년 복무제도 개선사항

3

난임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대상 : 난임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직원 (남직원 포함)

□ 주요내용

구 분	기 준	개 선
휴가일수	연 3일 (유급)	연 6일 (유급 3일, 무급 3일)

□ 신청경로 : ERP > 복무/출장 > 복무신청 > 휴가 > 신규 > 청원휴가 > 난임휴가

□ 시행일: 2025.1.1

4

유사산 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제74조

□ 대상 :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한 여직원

□ 주요내용

구 분	기 준	개 선
휴가일수	5일	10일

□ 신청경로 : ERP > 복무/출장 > 복무신청 > 휴가 > 신규 > 청원휴가 > 출산

□ 시행일: 2025.1.1

2025년 복무제도 개선사항

5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신설 근로기준법 제74조

- 대상 : 미숙아 출산 여직원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체중 2.5kg 미만
- 휴가일수 : 100일
- 신청경로 : ERP > 복무/출장 > 복무신청 > 휴가 > 신규 > 청원휴가
- 시 행 일 : 2025.1Q (추후 안내 예정)

6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2024년 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 대상 : 배우자 유·사산한 남직원
- 휴가일수 : 연 3일 (유급)
- 신청경로 : ERP > 복무/출장 > 복무신청 > 휴가 > 신규 > 청원휴가
- 시 행 일 : 2025.1Q (추후 안내 예정)

※ 긴급출동 지원 기준 및 근로시간 관리 체계 개선에 따른 모바일 Kate 체크 폐지 및 직책자가 출퇴근시간 일괄 기록은 2025년 1분기 이내 전산 반영 후 별도 안내 예정